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정국장 진정래)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개개인의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안 제5조 ~ 제6조)

❍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설치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안 제16조)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공유 사업 등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업무의 위탁(안 제17조 ~ 제19조)

❍ 표창 및 부상 등(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묵)

❍ 본 제정 조례안은 취·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구의 일자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구인구직 등 취업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20조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우수기관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감소 등 일자리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또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직업능력 향상, 평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 기 제정되어 있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종합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자리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49 호

제출연월일 : 201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개개인의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1)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다.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안 제5조 ~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사업(안 제7조)
마.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안 제8조 ~ 제15조)
  1)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해 설치
  2)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바.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르신·청년·여성 등 각 분야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등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당연직 위원장 또는 위촉직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 및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공유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17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표창 및 부상 등)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한 우수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을 대회나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받을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 제도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2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